

① 개정 개요

※ 국세 동반개정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원칙) 위탁자 ○ (예외) 수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요건)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는 신탁재산 - (대상) 지역·직장주택조합 <p>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위임 < 신설 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현행과 같음) ○ (예외) 좌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요건) 좌동 - (대상) 지역·직장주택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조합의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상) 지역·직장주택조합 + 「주택법」, 「도시정비법」, 「소규모주택정비법」, 「농어촌정비법」,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조합

□ 개정 내용

- 조합원들(위탁자)이 납부한 금전으로 조합(수탁자)이 매입한 부동산* (금전신탁)의 경우 지역·직장주택조합 외 다른 조합도 조합(수탁자)을 납세의무자로 규정

* 관련법에 따라 분양대상 제외 등으로 인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등

-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조합(수탁자)에 이전하는 경우(현물신탁)는 현행대로 원 소유자인 조합원(위탁자)에게 부과

신탁방식	납세의무자	
	현행	개정
■ 금전신탁	원칙: 위탁자(조합원)	조합(수탁자)
	예외: 수탁자(지역·직장주택조합 限)	
■ 현물신탁	위탁자(원소유 조합원)	좌동